

2017년 기초생활보장

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 됩니다.

11월부터 신청하세요

(노인·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)

□ 지원대상 :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□ 신청방법

1. 상담 및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※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)
2. 사실조사 및 심사 : 가구 소득·재산 등 조사
3. 급여결정 및 통지 : 30일 이내통지(60일 이내까지 연장가능)
4. 급여실시 : 급여 결정 후 지급

□ 신청시기 : 2017년 11월 1일부터

□ 상담문의 및 상세안내

*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*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

* 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

*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

* 교육급여 콜센터 1544-9654

* 교육부 홈페이지(www.moe.go.kr)

* 시 행복지원과 : 055-749-8478

* 복지포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* 읍·면·동 주민센터

※ 급여별 선정기준은 붙음 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.

○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가구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② 부양의무자(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)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.

- 다만, 부양의무자 기준은 ' 17.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.

(* 교육급여는 '15.7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)

< '17년 급여별 선정기준 >

구 분	1 인	2 인	3 인	4 인	5 인	6 인
생계급여	495,879	844,335	1,092,274	1,340,214	1,588,154	1,836,093
의료급여	710,760	1,210,213	1,565,593	1,920,973	2,276,353	2,631,733
주거급여	661,172	1,125,780	1,456,366	1,786,952	2,117,538	2,448,124
교육급여	826,465	1,407,225	1,820,457	2,233,690	2,646,923	3,060,155

○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자활·장제·해산급여(총 7종) 지원

구 분	지원 내용
생계급여	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=선정기준)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
의료급여	질병,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(진찰, 치료 등) 제공
주거급여	임차료(임차가구), 주택 개량(자가가구) 지원
교육급여	학생 수급자의 입학·수업료, 학용품비 등 지원
해산·장제급여	출산시 1인당 60만원,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
자활급여	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

○ 신청절차 : 상담·접수(읍면동) → 자산조사·보장결정, 급여 지급(시군구)

○ 기초수급(권)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, 세대구성, 임대차 계약내용,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(부정수급), 형사처벌 또는 급여 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